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 안 번 호	370
------------	-----

제출년월일 : 2008. 7. 15.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절 차 : 기관 · 단체 추천 ⇒ 공적심의 ⇒ 의회동의 ⇒ 수여
- 나. 수여시기 : 수시
- 다. 수여자 예우
 - ▶ 시 주관 각종행사 초청
 - ▶ 애경사시 축조전 및 화환 전달 등
- 라. 그간 수여인사 : 36명(광역시 이전 8명, 이후 28명)
- 마. 금회 수여대상자(1명) : 前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성권 이사장

3. 수여대상자 현황 및 공로개요

공로조서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2동 주공아파트 325-207		
소속 및 직위	前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기간	2007.1.1 ~ 2008.6.10
성명	이 성 권(李聖權)	생년월일	1952. 4.28
<p>○ 철도관련 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07. 5.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구간 철도변정비사업 및 노반공사 추진 행정지원 협조 - 지역업체 참여방안 강구 등 협력 - 대전역사 증축 및 사업추진 현안 발생시 적극 협력 -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 3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적극 동참 <p>○ 대전광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업무협력관 파견(07. 7.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부고속철도(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관 상호 파견(시-시설5급, 공단-토목분야 부장급) 업무 협력체계 구축 <p>○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수탁 협약체결(07. 12.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수탁공사 협약체결,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 입체교차시설 17개소 등 3개 분야 19건 대전광역시 위탁(약 1,800억원) <p>○ '지역의무공동도급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2008. 5.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본사를 비롯한 전국 74억미만 공사 30%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주 요 경 력			
년 월	이 력	년 월	이 력
1980년	제23회 행정고등고시	2005.9~2006.12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
2004~2005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	2007.1~2008.6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p>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08년 7월 11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추천자 : 대전광역시장</p>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비회기중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 대전광역시장이 수여하고 사후 대전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사무 처리규정

제2조(수여대상범위) ①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의 수여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에 협력한 자
2.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시·도 출신인사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
3.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대전광역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4. 과학·기술·경제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5.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단체장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
6.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선정절차) ②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설명하고, 사후 의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

□ 의안명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긴급 제출사유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일 14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집회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 수여대상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성권 이사장이 2008년 6월 10일자로 퇴임하였으나 재임기간중 대전을 위해 공헌한 공적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안건 제출시한(집회일 14일 전 까지)내 제출하지 못하였음.
-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성권 이사장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그 간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75회 시의회(정례회)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 보고서

2008년 7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7월 15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2008년 7월 16일
3. 상정일자 :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8. 7. 22)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절차 : 기관·단체 추천 ⇒ 공적심의 ⇒ 의회동의 ⇒ 수여
- 나. 수여시기 : 수시
- 다. 수여자 예우
 - ▶ 시 주관 각종행사 초청
 - ▶ 애경사시 축조전 및 화환 전달 등
- 라. 그간 수여인사 : 36명(광역시 이전 8명, 이후 28명)
- 마. 금회 수여대상자(1명) : 前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성권 이사장

3. 수여대상자 현황 및 공로개요

공로조서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2동 주공아파트 325-207		
소속 및 직위	前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 직 기 간	2007.1.1 ~ 2008.6.10
성 명	이 성 권(李聖權)	생 년 월 일	1952. 4.28

- 철도관련 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07. 5. 7)
 -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구간 철도변정비사업 및 노반공사 추진 행정지원 협조
 - 지역업체 참여방안 강구 등 협력
 - 대전역사 증축 및 사업추진 현안 발생시 적극 협력
 -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 3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적극 동참
- 대전광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업무협력관 파견('07. 7. 20)
 - 경부고속철도(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관 상호 파견(시-시설5급, 공단-토목분야 부장급) 업무 협력체계 구축
-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수탁 협약체결('07. 12. 11)
 -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수탁공사 협약체결,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 입체교차시설 17개소 등 3개 분야 19건 대전광역시 위탁(약 1,800억 원)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2008. 5. 7)
 - 대전본사를 비롯한 전국 74억미만 공사 30%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주 요 경 력

년 월	이 력	년 월	이 력
1980년	제23회 행정고등고시	2005.9~2006.12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
2004~2005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	2007.1~2008.6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8년 7월 11일

추 천 자 : 대전광역시장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박춘용)

- 본 동의안은 이성권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시 철도관련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 등 대전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고 향후 대전발전을 위해 계속 인연을 맺을 필요성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토론요지 : 생략

V. 질의답변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